**상 표 법**

**제1장 총칙**

**제1조**

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생산•경영자로 하여금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고, 상표의 신용과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평심위원회를 두어 상표 쟁의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게 한다.

**제3조**

등록상표란 상표국의 등록결정을 받아 등록된 상표를 말하며, 상품상표, 서비스상표와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서 단체상표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당해 조직 구성원이 상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조직에서의 사용자의 구성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장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증명상표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감독능력을 갖춘 조직이 통제하고 당해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정한다.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기가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위탁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품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서비스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한다.

**제5조**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동일 상표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고, 당해 상표권을 공동으로 향유,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한다.

**제7조**

상표사용자는 자기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8조**

문자, 도형, 자모, 숫자, 입체표장과 색채의 조합 및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 표장도 모두 상표로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상표등록출원을 한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지녀 식별하기 쉬워야 하고,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안 된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기호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제10조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및 중앙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장
   2. 외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당해 국가의 정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부간 국제기관의 명칭,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당해 국가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공중을 오도할 염려가 적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제 실시, 보증 부여를 나타내는 정부 당국의 표장이나 검험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다만, 수권(授權)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적십자(Red Cross)”, “적신월(紅新月Red Crescent)”의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6. 민족 차별성을 띠는 표장
   7. 과대선전 및 사기성을 띠는 표장
   8. 사회주의의 도덕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표장 현급 이상의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공중에게 알려져 있는 외국의 지명은 상표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지명에 다른 함의가 있거나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명을 사용하는 상표로서 이미 등록된 것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제11조**

1. 다음의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치수만으로 된 표장
   2.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 나타내 표장
   3.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 표장 전항에서 열거한 표장이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획득하여 식별하기 쉬운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입체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 단지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연유하는 형상이거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상품 형상 또는 상품이 본질적 가치를 갖게 하는 형상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14조**

1. 저명상표의 인정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상표가 관련 공중에 알려진 정도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 당해 상표의 모든 선정업무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 당해 상표의 저명성의 기타 요소

**제15조**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제16조**

표에 상품의 지리적표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해 상품이 당해 지리적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아 공중을 오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미 선의로 등록된 것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전항에서 지리적표시란 어떤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유래하고, 당해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과 평판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당해 지역의 자연적 요소 또는 인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표장을 가리킨다.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인가한 상표 대리 자격을 가진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19조**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류구분과 상품의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표등록출원인이 서로 다른 류구분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상표를 동일 류구분의 다른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표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등록상표에 대하여 그 등록인의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상표등록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우선권의 상호승인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또한3월 이내에 최초로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상표등록출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상표를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출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당해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향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주장하여야 하며, 또한3월 이내에 당해 상품을 출품한 전람회의 명칭, 출품한 상품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 출품일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6조**

상표등록출원을 위해 신고한 사항 및 제출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비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등록결정**

**제27조**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8조**

상표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이미 등록하였거나 또는 출원공고결정을 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

**제29조**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다. 같은 날에 상표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를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하며, 그 밖의 타인의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

**제30조**

출원공고결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1조**

상표출원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공고결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이 진술하는 사실과 이유를 듣고 해당 사실을 조사한 후 재정을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을 하고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복심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상표국이 한 재정에 대하여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한 재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지 않는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취득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공고 후 3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5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복심청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서류 또는 상표등록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경정을 하고 또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항에서의 오류를 정정은 상표등록출원서류 또는 상표등록서류의 실질적 내용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4장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락**

**제37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등록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8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연장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등록말소한다. 매회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10년이다. 갱신등록은 심사를 거쳐 허가한 후 이를 공고한다.

**제39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상표국에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는 심사를 거쳐 허가한 후 이를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권을 향수한다.

**제40조**

상표권자는 상표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인은 피허락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피허락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락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상표사용허락계약은 상표국에 신고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상표 쟁의의 재정**

**제41조**

이미 등록된 상표가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기타 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무효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상표등록의 무효를 재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 등록에 대해서는, 저명상표소유자는 5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2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정 청구를 접수한 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등록결정 전에 이미 이의가 신청되고 또한 재정을 거친 상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다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제43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등록을 유지 또는 취소하는 재정을 한 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4조**

1. 등록상표의 사용이 다음의 각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1.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 등록상표의 등록인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연속하여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제45조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그 상품을 조잡하게 마구 만들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각급 공상행정정관리부문은 각각의 정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공개 견책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는 상표국이 당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제46조**

제46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일 혹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지 않는다.

**제47조**

제47조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1. 미등록상표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를 제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게 하고 동시에 공개 견책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등록상표인 것처럼 허위표시하는 경우
   2. 이 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조잡하게 마구 만들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제49조**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상표국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린 처벌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7장 상표권의 보호**

**제51조**

상표권은 등록결정된 상표와 사용하기로 지정된 상품에 한한다.

**제52조**

1. 다음의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속한다.
   1. 상표권자의 허락를 받지 않고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2.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4.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또한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5.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

**제53조**

이 법 제52조에서 열거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침해품 및 침해품의 제조,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를 몰수, 폐기하며, 또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또한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1.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미 취득한 위법 혐의의 증거 또는 고발에 근거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타인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정황을 조사하는 것
   2. 침해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의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 열람, 복제하는 것.
   3. 당사자가 타인의 상표권 침해 활동을 행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
   4. 침해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는 것.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차압 또는 압류하는 것.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당사자는 이에 협조,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6조**

상표권 침해의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에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 기간에 피침해로 입은 손해로 하며,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한다. 전항에서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50만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여,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고 또한 그 제공자를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7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는 타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장차 실시할 것이고, 만약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 명령 및 재산보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되거나 나중에는 취득하기 어려운 정황 하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 재정하여야 한다.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재정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에서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9조**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일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등록상표를 도용한 상품임을 알고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하게 자신을 규율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및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상표대리업무 및 상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1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확립하여,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의 국가기관 공무원이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하고 기율을 준수하는 정황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업무의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사로이 사리를 도모하거나, 위법하게 상표등록, 관리 및 복심 사항을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재물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63조**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